

## 행정 수수료 공제 인정

우편 발송 주소: NYC Department of Finance, Treasury/Court Assets Unit, 66 John Street, 12th Floor, New York, NY 10038

지침: 이 양식을 작성하고 공증한 후 위의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.  
자세한 정보는 212-908-7619번으로 전화하거나 [nyc.gov/contactcourtassets](http://nyc.gov/contactcourtassets)을 방문하십시오

1. 법원명: \_\_\_\_\_ 2. 법원 카운티: \_\_\_\_\_

3. 재판등록번호: \_\_\_\_\_ 년도: \_\_\_\_\_

4. 사건명: \_\_\_\_\_ 대 \_\_\_\_\_

본인, \_\_\_\_\_ (은)는 상기 사건의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변호인입니다. 본인은 CPLR의 8010조에  
정자체 성명

따라, 재무부는 본인 또는 본인의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액의 2퍼센트(2%)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(해당하는 경우 미수 이자 포함).

아래에 서명하고 본 문서를 재무부, 재정/법원 자산과에 제출함으로써, 본인은 법원 명령에 명시된 금액에서 2퍼센트(2%)의 공제를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

정자체 청구인 성명: \_\_\_\_\_

청구인 서명: \_\_\_\_\_

또는

정자체 청구인의 변호인 성명: \_\_\_\_\_  
(해당하는 경우)

변호인 서명: \_\_\_\_\_  
(해당하는 경우)

20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, 본인 앞에서 선서하는 바입니다

공증인

직인이나 인장